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35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'중앙주거복지센터'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용산구 한강로2가 426외 1필지 용산베르디움 프렌즈 커뮤니티시설 제2층 제208호
- 사용자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43.0846 m^2 , 건물 연면적 611.23 m^2
- 사용허가 기간 : 2026.6.1. ~ 2031.5.31.(5년)
- 예상 감면액 : 145,082천원(월2,418천원) ※ 1차년도 : 29,016천원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 25개

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총괄 지원 및 주거복지 정책개발·연구·교육 등 서울시 공공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음

-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 제5항 제3호
 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3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6.3.12.)
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
 - 심의결과 : '조건부 적정'

〈조건사항〉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협력팀 남은주 (☎2133-7982)